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86
----------	-------

발의연월일 : 2026. 5. 7.

발 의 자 : 김 건 · 박충권 · 곽규택
김기웅 · 정성국 · 나경원
강선영 · 김미애 · 이소희
윤상현 · 조지연 · 유용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의 경우 현행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자질 논란, 보은성 인사 등 임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내부절차인 공관장 자격심사와 별도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임공관장 임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임공관장 임용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20조의2에 따라 가장 높은 직무등급에 배정된 특임공관장의 경우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심사 경과 보고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특임공관장) ① (생 략)</p> <p><u><신 설></u></p> <p>② ~ ④ (생 략)</p>	<p>제4조(특임공관장) ① (현행과 같 음)</p> <p>② <u>제1항에 따른 특임공관장 임용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20조의2에 따라 가장 높은 직무등급에 배정된 특임 공관장의 경우 「국회법」 제6 5조의2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 문을 거쳐야 한다.</u></p> <p>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p>